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건설교통부는 건설대기업에게 토목·건축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소방설비까지 일괄 발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공사업자의 부실시공을 견제하기 위한 설계와 감리까지 함께 관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함으로써 한의사·약사와 같은 건설계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외면한 채 건설대기업에게 시공은 물론 설계와 감리도 제멋대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자영역이던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시공·감리와 안전관리 영역인 유지·보수업무까지 건설업에 흡수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을 건설기술인으로 통합시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장케 함으로써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

리법」을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소방분야의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영역을 건설대기업의 하도급 체제로 이끌어 우리의 기술과 업역은 물론 궁극적으로 전기공학과까지도 말살하여 건설대기업만 육성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지난 7월 16일(화) 13시 과천 정부제2청사앞 광장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 소방설비시공회원협의회 공동으로 2만여 회원들이 모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추진을 반대하는 궤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을 반대하면서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50만 전력기술인이 총력을 기울여 결사투쟁하고자 하니 회원께서는 협회의 연락이 있을 때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7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 회장 권 용 득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 신·구조문 대비표 -

1996. 7

건설교통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배경

건설산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건설업법에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12개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6개부처로 다원화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일반국민이나 건설업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WTO 출범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체계를 단순화하고, 건설공사와 건설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의 경우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법화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94. 7. 29 :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건설공사시공자격제도에 관한 법규 및 관할기관의 단순화방안」을 장기개선과제로 채택
- '94. 8~'94. 12 :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개선방안연구
- '95. 3. 29 : 건설시장개방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95. 7~'96. 2 :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동기획단에서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 수립
- '96. 2. 13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에서 「건설산업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대책」 심의·의결

- '96. 4. 29 :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3. 건설산업기본법안의 주요내용

(건설업법 개정사항)

1) 건설산업경쟁력강화대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

-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편
 - 건설업의 범위를 도급공사의 시공외에 건설공사에 수반된 조사·설계·건설사업관리와 개발형 자기공사까지로 확대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건설교통부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건설업에 관한 자격제도의 단순화
 -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개별적으로 공사업법이 완비된 업종은 현행대로 존치 : 기본법의 기본적인 사항만 적용
 - 개별적인 공사업법이 없이 등록제 등으로 건설업자격제도만 둔 9개업종(환경, 에너지, 가스 등)은 기본법으로 통합(소관부처가 면허 등 업체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전문업종은 당해 부처에 업무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면허제도 개선
 -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중 특수건설업을 폐지하여 건설업면허

구조를 단순화

- 매년1회 실시하도록한 건설업면허주기를 폐지
- 건설업의 업종간 겸업금지를 완화
- 폭력행위자·부도발생한 자를 건설업면허결격사유로 추가
- 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
 -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시공능력 공시만 하고 규제기능은 폐지
 - 발주자는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공사의 특성에 맞게 등급이나 균을 편성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자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발주자에게 제공
- 대규모복합공사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
 - 건설사업관리업자는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는 자로 함.
 - 공항·고속철도 등 대규모 복합공사는 건축사무소 등록없이도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에게 건축설계업무를 포함한 건설관리업무를 허용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공정화 지도근거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정·보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건설분쟁중재원으로 개편
- 공사현장실명제 도입
 - 공사에 실제 참여한 십장, 기능공, 장비 임대업자 등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발주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경우는 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대금수령등에 있어 하수급자와 같이 보호함.
- 건설근로자복지카드제 시행 및 지원근거

신설

- 공제조합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공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행정쇄신위원회 및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의결사항

-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보증서를 받은 경우는 수급인도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95. 행정쇄신위원회 의결>
- 협회설립 및 가입 임의화<'95.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의결>
 - 건설업자들의 협회설립 및 가입을 임의화하고, 건설업자단체연합회 설립근거 규정을 신설

3)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반영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강화
 - 도급금액 하한제도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결정기준은 공시한 시공능력이나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발주기관에 중소기업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 대형업체와 중소기업체간에도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수주·인력·기술개발 등에 있어 상호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유도

4) 기타 개정사항

- 공제조합법을 통폐합
 -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담합행위자 처벌요건 조정
 - 처벌의 대상이 되는 담합행위자 및 입찰방해자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업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업의 면허, 건설공사의 도급, 시공, 기술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p> <p>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산업기본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도급·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수행에 적정을 기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1. "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건설공사 또는 이에 수반되는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영업. 나. 전기공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다. 전기통신공사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라. 소방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바.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업 사.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 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업</p> <p>2.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법의 일반 법화 • 개발형자기공사와 건설공사에 수반된 엔지니어링 활동을 건설업에 포함 • 개별법에 의한 공사를 포괄하도록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한다.</p> <p>3. "건설업자"라 함은 <u>이 법의 규정</u>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조성공사, 구조물의 축조 및 해체공사, 설비의 조립·설치 및 해체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등을 말한다.</p> <p>3. "건설업자"라 함은 이법 또는 제1호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거나 등록·지정 또는 신고(이하 "면허등"이라 한다)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p>	<p>함</p>
<p><신설></p>	<p>4.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p>	
<p><신설></p>	<p>5.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업자로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타인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자문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5.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p>	<p>6. ----- 건설공사 또는 건설 용역 ----- ----- ----- -----</p>	
<p>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p>	<p>7.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u>건설공사 또는 건설용역</u>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p>	
<p>6.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인 건설업자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p>	<p>8. ----- ----- ----- 제3자와 ----- -----</p>	<p>• 하도급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7.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p> <p>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p> <p>9. “건설기술자”라 함은 <u>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u></p>	<p>9. (현행 제7호와 같음)</p> <p>10. (현행 제8호와 같음)</p> <p>11. “건설기술자”라 함은 <u>건설업분야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u></p>	<p>• 건설업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범위도 확대</p>
<p>제3조(적용범위) <u>이 법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건설업자가 이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제21조·제21조의2·제22조·제23조 내지 제32조·제32조의 2 내지 제32조의 10·제37조·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u></p>	<p>제3조(적용범위) <u>이 법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건설공사 또는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신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u>건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설업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48조, 제49조, 제66조 내지 제77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u></p> <p>② <u>이 법 이외의 법령에서 건설업자의 자격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신설></p>	<p>제5조(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① <u>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이나 외국법</u></p>	

구분	개 정 안	개정이유
<p><신 설></p>	<p>인에게 건설업면허등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업에 관하여 외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을 신청하는 경우 주무부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등의 신청시기, 면허등의 기준의 적용, 심사방법등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p> <p>제6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p> <p>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의 육성·건설기술의 개발·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매 5년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산업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건설기술개발 및 인력육성대책 3. 건설산업의 국제화와 해외진출 지원 4. 건설산업에 관한 안전 및 품질확보대책 5. 중소건설업체의 육성대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시장동향, 건설기술개발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매년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건설관련 주체등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관한 제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신 설></u></p> <p>제2장 <u>건설업의 면허와 양도</u></p> <p>제5조(건설업의 종류) <u>건설업은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u>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시방·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p> <p>제8조(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① <u>건설산업제도의 개선에 관함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u> 2. <u>건설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수급 대책</u> 3. <u>건설기자재 수급대책</u> 4. <u>건설공사의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u> 5. <u>건설산업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u> 6. <u>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p>② <u>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장 <u>건설업자의 자격</u></p> <p>제9조(건설업의 종류) ① <u>건설업은 건설용역업·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한다.</u></p> <p>② <u>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보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영업으로서 그 종류 및 업무내용은 제2조제1호마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③ <u>일반건설업은 시설물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공하는 영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u></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6조(건설업의 면허등)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한다.</p> <p>③ 건설업의 면허는 매년 1회 실시한다.</p> <p>④ 건설업의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p> <p>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한다.</p> <p>④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설계·시공하는 영업으로서 그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건설업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0조(건설업자의 자격) ①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면허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수첩을 교부한다.</p> <p><삭 제></p> <p>③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은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 또는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 ----- -----</p>	
<p>제7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건설업의 점업제한) ① 일반건설</p>	<p>제11조(건설업면허 등의 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등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건설업의 점업제한) ① 일반건</p>	<p>• 점업허용범위 : 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 또는 특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특수건설업자"라 한다)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p> <p>②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2개업종에 한하여 중복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p> <p>제9조(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u>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로 받은 자 제5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p>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u></p> <p>②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는 <u>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건설업면허등의 결격사유) ① -----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8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 면허 또는 등록이 ----- 5년을 ----- 자.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는 취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국가보안법·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부정수표단속법의 죄를 범하거나 이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 ----- 5년 ----- 	<p>른법률에서 편입되는 업종과 특수건설업에서 전환되는 업종등은 일반건설업과 겸업을 허용</p> <p>· 겸업제한 완화</p> <p>· 건설업면허결격사유 추가 : 부실시공으로 면허취소된 자와 법인인 경우 취소원인이 된 행위자와 대표자, 폭력범죄자·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p> <p>· 결격사유 적용기간 연장 : 5년</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② 건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u>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u>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 ----- <u>면허나 등록은</u> ----- ----- ----- <u>경우</u> ----- <u>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월이내</u>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자 교체기간의 기산점을 결격사유를 안 날로 함
<p>제10조(면허취소등의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 <u>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나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u> 건설업의 <u>면허가 그 효력을 잃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② 제1항의 경우 건설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업자로 본다.</p> <p>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14조(면허·등록취소등의 처분후 건설업자의 계속공사) ① -----<u>면허·등록의 취소</u> ----- ----- ----- ----- ----- <u>면허·등록이</u>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건설업자의 신고의무) ① 건설업자는 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삭제 <u><신설></u></p>	<p>제15조(건설업자의 신고의무 등) ① ----- ----- ----- ----- -----</p> <p>② <u>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등을 받은 자로서 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신고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중복 취득한 경우 변동사항 신고의무 간소화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수 있다.</p> <p>제13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건설업자인 법인과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의 면허는 그 건설업을 양수한 자에게,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의 면허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업의 상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u>건설업면허의</u>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p>	<p>제17조(건설업의 양도등) ① ----- ----- ----- ----- ----- ----- -----</p> <p>② ----- ----- - 면허 또는 등록은 ----- ----- -----</p> <p>③ ----- ----- - 건설업면허등 ----- ----- -----</p>	
<p>제14조(건설업양도의 인가신청)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비용은 양도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③ 건설업의 양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18조(건설업양도의 인가신청) ① 제17조 ----- ----- ----- ----- ----- ----- -----</p> <p>② ----- ----- ----- ----- ----- ----- -----</p> <p>③ ----- ----- ----- ----- ----- ----- -----</p>	
<p>제15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 건설업의 양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그 전부의 양도에 한한다.</p> <p>1. 2가지 업종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p>	<p>제19조(건설업양도의 내용등) ① ----- ----- ----- ----- -----</p> <p><삭 제></p> <p>1.~2.(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 건설업면허를 수시로 발급하게 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도급계약</u></p> <p><u>제21조(건설공사도급계약의 원칙)</u> ① <u>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u></p> <p>② <u>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후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u></p> <p>③ <u>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상황을 기재한 <u>건설공사도급대장</u>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u></p> <p><u>제17조(건설공사도급의 제한)</u> ① <u>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이하 “<u>도급한도액</u>”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공사착수후에 설계변경·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되어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u>도급한도액</u>을 초과하게 된 경우</u></p> <p>2. <u>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높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u>도급한도액</u>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u></p> <p>3. <u>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u>정부투자기관</u>”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u>도급 및 하도급계약</u></p> <p><u>제22조(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u></p> <p>① <u>건설업에 관한 도급계약의</u> - - - - - - - - -</p> <p>② <u>도급계약의</u> - - - - - - - - -</p> <p>③ - - - - - - - - - <u>건설공사대장</u> - - - - - -</p> <p><u>제23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공시등)</u> ① <u>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자는 제외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자본금, 건설공사의 실적 등에 따라 평가한다.</u></p> <p>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실적과 자본금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 <u>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공시제도로 전환</u></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가 도급받는 경우</p> <p>③ 도급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금액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8조(도급한도액의 결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매영업년도의 도급한도액을 그의 자본금과 건설공사의 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p> <p>②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년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결정받고자 할 때에는</p>	<p>제24조(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자들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또는 용역의 수행상황 등 건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인력의 수급상황등 건설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공사발주기관 및 관련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건설업자,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업자, 관계행정기관, 관련사업자단체, 연구기관 및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공시수행상황, 건설자재의 생산·판매상황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8조(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제2항으로 이관 • 건설산업, 정보망 구축 근거 마련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전영업년도의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도급한도액을 결정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당해 건설업자에게 적용할 도급한도액은 쯤으로 본다.</u></p> <p>제19조(도급자격제한의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설업자의 도급자격요건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는 등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신설></p>	<p>제25조(수급인의 자격제한) 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면허등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나 수급인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과 공사의 특성 등에 따라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p> <p>제26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복합공사의 설계·감리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2조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도급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제한근거 마련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근거 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20조(견적기간) 발주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전에, 경쟁계약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붙이기 전에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견적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p>	<p>제27조(견적기간)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 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p> <p>②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耐用기간 또는 설계상의 구조耐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p>③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의 책임 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③(현행과 같음)</p>	
<p>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p>	<p>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 - - - -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 -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부분의 대부분의 하도급을 일괄하도급으로 규정한 시행령의 위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 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p> <p>-----</p> <p>-----</p> <p>② -----</p> <p>-----</p> <p>-----</p> <p>----- 하도급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p> <p>③ -----</p> <p>----- 일반건설업자 -----</p> <p>-----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력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에 -----</p> <p>④ (현행과 같음)</p>	<p>임근거 마련</p> <p>• 주요부분의 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통제를 가능하게 함</p> <p>• 발주자가 승락시 검토기준을 명시함</p>
<p>제22조의2(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전문공사를 다른 부분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하는 것이 하도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p>	<p>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 -----</p> <p>-----</p> <p>-----</p> <p>-----</p> <p>-----</p> <p>----- 다만, 제2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와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는 의무하도급 대상에서 제외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받아 도급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제23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유를 들어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24조 삭제</p> <p>제25조(하수급인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p> <p>②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제26조(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7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p>	<p>제31조 (현행과 같음)</p> <p>제32조(현행과 같음)</p> <p>제33조(현행과 같음)</p> <p>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100분의 85미만의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p> <p><u><신 설></u></p> <p>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추가비용이 드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율에 따라 추가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p> <p>제30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p>	<p>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 -----</p> <p>-----</p> <p>4. (현행과 같음)</p> <p>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6조 (현행과 같음)</p> <p>제37조 (현행과 같음)</p>	<p>•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제도 이행 확보</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결과 설계의 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p> <p>제31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p> <p><신 설></p>	<p>제38조 (현행과 같음)</p> <p>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p> <p>제39조(시공관리대장의 작성·비치) ① <u>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신고하고 시공조직도를 작성하여 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에는 수급인·하수급인과 기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이하 "시공참여자"라 한다)와 이들이 각각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시간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약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③ <u>건설업자가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에 명시된 시공참여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사를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제35조,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되 제34조제1항,</u></p>	<p>• 「건설공사 현장실명제」 도입</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그 공사의 <u>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건설공사는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④ 전문건설업자는 그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u>같음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를 배치할 수 있다.</u></p>	<p>제35조중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시공참여자”로 본다.</p> <p>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의 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시공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p> <p>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 - - - - - - - - - - - - <u>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건설기술자</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 - - - - - - <u>기능계 기술자</u> - - - - - -</p>	
<p>제4조(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u></p>	<p>제41조(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①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당해공사의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공사도 건설업에 포함됨에 따라 조문정리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1.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공사</p> <p>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 일반공중의 이용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p> <p><신설></p> <p>제34조(건설기술자 겸직의 금지) 건설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는 다른 사업체(자기 스스로 경영하는 건설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35조 삭제</p> <p>제36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p> <p>②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감리원 및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대표자성명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설</p>	<p>1.~3. (현행과 같음)</p> <p>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의 행정처분을 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공사의 시공자에 대하여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을 참작하여 공사의 수행능력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2조 (현행과 같음)</p> <p>제43조 (현행과 같음)</p>	<p>• 주요시설의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인·허가권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치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제상하여야 한다.</p> <p>제37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② 건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p> <p>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44조 (현행과 같음)</p>	
<p>제5장 <u>경영합리화</u></p>	<p>제5장 <u>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체 지원</u></p>	
<p>제38조(경영합리화의 노력) 건설업자는 도급질서의 확립, 건설공사시공의 적정화, 재무관리의 건전화 등 경영합리화와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5조 (현행과 같음)</p>	
<p>제39조(경영지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 경영의 개선 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의 경영에 관하여 건설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재무관리 및 기술관리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경영개</p>	<p>제46조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중·장기 또는 년차별 경영 개선에 관한 계획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제출한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p> <p>제39조의2(경영자 연수교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현행 제17조 제4항></p> <p>제40조(하도급의 계열화)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건설업자</p>	<p>제47조 (현행과 같음)</p> <p>제48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법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제49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중소기업자의 참여기회의 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p> <p>제50조(건설업자간의 협력)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관계를</p>	<p>•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강화</p> <p>• 건설업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체와의 협력에 관하여도 지도할 수</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하도급의 계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건설업자 및 특수건설업자로 하여금 하도급할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를 등록받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한 자에게 다른 전문건설업자에 우선하여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한 경우 그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정보등을 교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하도급의 계열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1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재산·시공상황 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p>	<p>유지하도록 건설업자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된 협력업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선정 2.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정보의 교환 3.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등 <p>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건설업자와 협력업체간의 협력관계를 평가하여 우수한 일반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발주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업자의 등록과 건설업체간의 협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1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있도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당해 업종에 대한 업종별공사협회 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 종별공사협회의 회원이 된다.</p> <p>⑤ 전문건설협회와 업종별공사협회 의 상호협력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p> <p>⑥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 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각 협회의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영업정 지의 기간중 정지되며, 건설업의 면허 가 취소되거나 소멸된 때에는 각 협 회의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p>		
<p>제43조(임원 및 그 선출방법) ① 각 협 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이사 및 감 사를 둔다.</p> <p>② 회장은 각 협회의 회원중에서 총 회가 선출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감사는 각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 한다.</p> <p>④ 각 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회의 정관으로 한다.</p>	<p><삭 제></p>	
<p>제4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 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업 종별공사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p>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가 다원화되 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 사한 협회가 있으 므로 실효성이 없 음
<p>제45조(건의와 자문) ① 각 협회는 건 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p> <p>② 각 협회는 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53조(건의와 자문등) ① 각 협회 및 연합회는 ----- -----</p> <p>② 각 협회 및 연합회는 ----- -----</p> <p>③ 각 협회는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건설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업체에 대한 자율정비근거 신 설
<p>제46조(감독) 각 협회는 건설교통부장</p>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규정 적용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관의 감독을 받는다.</u></p> <p>제47조(민법규정의 준용) <u>각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48조(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u>각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5인이상이 발기하고 건설업자 5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업종별공사협회에의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있는 건설업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② <u>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u></p> <p>③ <u>각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u></p> <p><u><신설></u></p>	<p>제54조(민법규정의 준용) <u>각 협회 및 연합회에</u> -----</p> <p>-----</p> <p>-----</p> <p>제55조(설립의 인가절차등) ① -----</p> <p>-----</p> <p>-----</p> <p><u>회원의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3분의 2 이상의</u> -----</p> <p>----- <u>한</u></p> <p><u>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각 협회 또는 연합회</u> -----</p> <p>-----</p> <p>-----</p> <p>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p> <p>제56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u>건설업자는 상호 협동조직을 통한 신용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협회가 설립된 경우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행하기 위하여 일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업자 또는 건설용역업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종별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u></p> <p>② <u>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동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p> <p>③ <u>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이</u></p>	<p>• 공제조합 설립근거법을 기본법으로 통합</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발기인이 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용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부금 및 예탁금의 수입 5.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6. 건설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 7. 건설업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8.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9.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응용과 관련한 서비스에 관한 사업 11.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1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p>• 부금·예탁금 취급근거 신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신설></p>	<p>13.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제도</p> <p>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p> <p>② 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간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상호교환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제58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중 제57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59조(지분의 양도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③ 지분의 양도·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입질의 방법에 의한다.</p> <p>④ 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p> <p>제6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제조합간 협력체제 구축근거 신설 • 현행 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을 반영

연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p><신 설></p>	<p>3. 조합원의 탈퇴로 자기 출자액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한 때</p> <p>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p> <p>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p> <p>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고, 같은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p> <p>③ 조합원의 지분은 각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의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p> <p>④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 취득금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제61조(신용에 의한 보증등)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공사의 이행능력을 심사한 후 보증 및 용자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62조(시공상황조사 등) ① 공제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②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각 협회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이를 대</p>	<p>• 신용평가제 실시 근거 마련 및 공사완성보증제도 입에 대비</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u><신 설></u></p> <p><u>제3장의3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u></p> <p>제32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소속하에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u>행하게 할 수 있다.</u></p> <p>제63조(보고의 제출, 서류의 검사등) <u>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의 검사나 장부 기타 서류의 검열을 하게 할 수 있다.</u></p> <p>제64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기타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에게 납입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p> <p>③ 공제조합이 제57조제13호에 의한 공제사업을 운용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제65조(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u>제8장 건설분쟁중재원</u></p> <p>제66조(설립) ①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건설분쟁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조합의 부실화 방지 및 보증채권자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의 근거마련(현행규정)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3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32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p>	<p>③ 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④ 중재원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p> <p>⑤ 중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p> <p>제67조(임원 및 임기) ① 중재원에는 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p> <p>② 원장은 제7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건설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p> <p>③ 이사 및 감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④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68조(재원) ① 중재원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출연금 건설업관련 공제조합의 출연금 중재수수료 <p>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p> <p>제69조(업무) ① 중재원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 시공, 감리등 건설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 책임에 관한 분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결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기타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의7(조정 의 효력) ①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의5(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2조의6(조정부) ① 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될 조정부를 둘 수 있다.</p> <p>②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조정부는 미리 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p> <p>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p>	<p>제70조(중재인) ① 중재원에는 중재인을 두되, 중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 원장이 위촉한다.</p> <p>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p> <p>3.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② 중재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중재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간 명을 상임하게 할 수 있다.</p> <p>제71조(조정) ① 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조정은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에서 행한다.</p> <p>③ 조정부의 구성원인 중재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지명한다.</p> <p>④ 조정부가 작성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고 서명·날인한 때에는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p> <p>제72조(중재) ① 중재는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합의하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에 의하여 신청한 때에 행한다.</p> <p>② 중재판정은 중재인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부에서 행하되, 3인중 1인은 제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p>③ 중재부의 구성원인 중재인은 당사자의 쌍방이 각 1명씩 지명하고 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p> <p>④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 <p>제32조의8(조정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의9(비용분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p> <p>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10(위원회의 운영등) 제32조 내지 제32조의9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중재인은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74조(조정 및 중지) ① 중재원은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중재원은 조정사건의 처리절차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5조(위법사실의 불고지의무) 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조사·감정·심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신청내용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신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76조(타 법률의 준용) 분쟁의 중재에 관하여 이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77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변경) ① 중재원은 조정·중재신청의 조사·심리절차,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등을 중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거쳐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위법사실로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분쟁조정이나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감독</u></p> <p>제49조(시정명령등)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2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하도급계약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초 견적한 내용대로의 하도급계약체결을 거부한 때 제27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 <p>제50조(영업정지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당한 사유없이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p style="text-align: center;"><u>제9장 감독</u></p> <p>제78조(시정명령등) ----- ----- ----- ----- ----- 1. 제23조제3항 ----- ----- ----- 2. (현행과 같음) 제28조 ----- ----- ----- 제30조제2항 ----- ----- ----- ----- ----- 제34조·제36조 내지 제38조 ----- ----- ----- 제40조 ----- ----- ----- ----- ----- 건설공사 ----- ----- ----- <p>제79조(영업정지등) ① ----- ----- ----- ----- ----- 1. ----- 제78조 ----- ----- -----</p> </p>	<p>• 시공자의 고의·과실유무에 불구하고 시정지시토록 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을 본다.</p> <p>3.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3의2.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p> <p><신설></p> <p>4. 삭제</p> <p>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p>	<p>2. 제28조 -----</p> <p>3.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후 -----</p> <p>4. 제29조제2항 -----</p> <p>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p> <p>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할 때</p> <p>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p> <p>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 -----</p>	<p>• 면허취소사유에서 영업정지사유로 완화</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p> <p>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p> <p>3.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p> <p>5. 제50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p> <p>6.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p> <p>7.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p> <p>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p> <p>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p> <p>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p> <p>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이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8.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면허취소의 요구가 있는 때</p> <p>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p>	<p>--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거나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은 때</p> <p>2. 제11조 -----</p> <p>3. 제21조 -----</p> <p>4. 제29조제1항 -----</p> <p>5. 제79조 -----</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8. (현행과 같음)</p> <p>② -----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 -----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 -----</p>	<p>• 6월이내 영업정지로 완화</p>
<p>제53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건설업자에게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p>	<p>제82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 제78조 -----</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55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p> <p>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p> <p>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에 의한 공제조합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공제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부담한 경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p> <p>⑥ 공제제도의 적용범위·시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5조 (현행과 같음)</p>	
<p>제56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p> <p>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인가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건설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6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p> <p>-----</p> <p>----- 제</p> <p>87조제1항 -----</p> <p>-----</p> <p>-----</p> <p>-----</p>	
<p>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도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신설></p>	<p>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p> <p>-----</p> <p>-----</p> <p>----- 시·도지사 -----</p> <p>-----</p> <p>-----</p> <p>② 전문건설업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전문공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의 장</p>	<p>• 다른 법률에서 흡수되는 전문건설업에 관한 권한은 해당부처에 위탁</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협회 또는 기타 건설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신고의 수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인가신청의 신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산정, 건설공사실적등의 신고의 수리 삭제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자연수교육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하도급제열화의 지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 및 건설업자실태조사부의 작성·보판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건설공사의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p>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③ ----- ----- ----- 각 협회, 연합회, 공제조합 또는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5조제1항 ----- ----- 제18조 ----- ----- 제23조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46조 ----- 제47조 -----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 협력의 지도 제51조 -----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등의 조사와 ----- ----- ----- 	<p>할 수 있도록 함</p>
<p>제58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청하는 자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증 또는 건설업면허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양도인가 또는 법인합병인가를 신청하는 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 	<p>제88조(수수료)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1항 및 제5항 ----- ----- 건설업면허증을 ----- 제10조제2항 ----- ----- 제10조제3항 ----- ----- 제17조제1항 ----- ----- 제17조제3항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설업의 상속인가를 신청하는 자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 쟁조정을 신청하는 자</p> <p><u>제9장 벌칙</u></p> <p>제58조의2(벌칙) ① 건설업자 또는 제 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 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 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 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1 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 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 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여 공중 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1항의 죄를 범하고 사람을 사상 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58조의3(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8 조의2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업무상 과실로 제58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 해한 자</p> <p>2. 삭제</p>	<p>----- <삭 제></p> <p><u>제11장 벌칙</u></p> <p>제89조(벌칙) ① ----- 제 40조제1항 ----- ----- ----- 제28 조 ----- ----- ----- ----- ----- ----- -----</p> <p>② ----- ----- -----</p> <p>제90조(벌칙) ① ----- 제89 조 ----- ----- ----- -----</p> <p>② ----- 제89조 ----- ----- -----</p> <p>제91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p> <p>1.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다른 입찰자 로 하여금 미리 조작한 가격에 따 라 입찰하도록 한자와 이에 응하 여 입찰서를 제출한 자</p> <p>2. 다른 사람의 견적을 제출한 자</p> <p>3. 금품수수 또는 폭력행사의 방법으 로 다른 사람의 입찰행위를 방해 한 자</p>	<p>• 담합행위자의 처 벌범위를 보다 명 백히 정리함</p>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등의 인가를 받은 자 4. 제1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p>제92조(벌칙)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 ----- ----- 2. 제10조제1항 ----- -- 제17조 ----- ----- ----- 3. ----- 제10조 ----- -- 면허·등록 -- 제17조 -- ----- ----- 4. 제21조 ----- ----- 	
<p>제6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p>제93조(벌칙)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3항 ----- ----- 2. 제40조 ----- ----- 	
<p>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4호의 경우에는 하도급하여야 할 전문공사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자. 다만,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하한에 미달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 	<p>제94조(벌칙) -----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 ----- ----- 2. 제29조 ----- -----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 ----- 3. 제30조제1항 ----- ----- 4.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 -----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제63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의3 및 제59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95조 ① ----- ----- ----- 제89조 ----- ----- ----- -----</p> <p>② ----- ----- ----- 제89조 내지 제94조 ----- ----- ----- -----</p>	
<p>제64조(벌칙운용의 특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제96조(벌칙운용의 특례) 제79조 ----- ----- ----- 제94조 ----- ----- -----</p>	
<p>제65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자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다른 건설사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당해 건설기술자가 동조에 위반하게 한 건설업자 	<p>제97조(과태료)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제2항 ----- ----- 2. 제22조제2항 ----- ----- 3. 제22조제3항 ----- ----- 4. 제29조제2항의 규정 ----- ----- 5.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6. 제42조 ----- ----- -----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p>6.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다</p> <p>7.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7. 제51조제1항 ----- ----- -----</p> <p><삭 제></p>	
<p>제6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p> <p>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p> <p>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p> <p>3. 삭제</p> <p>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p>	<p>제98조(과태료) ----- ----- -----</p> <p>1. 제15조제1항 ----- -----</p> <p>2. 제23조제3항 ----- -----</p> <p>3. 제51조제1항 ----- -----</p>	
<p>제67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제99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 제97조 및 제98조 ----- ----- -----</p> <p>②~④ (현행과 같음)</p>	

